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영국의 노동생활

Claire Evans (워릭대학교 노사관계연구소(IRRU))

이 글은 코로나19 대유행이 2020~2021년 영국의 노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배경 설명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영국에서 실시된 일련의 봉쇄조치를 설명하고 경제 및 노동시장 지표 중 일부를 검토한다. 뒤이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영국 정부가 실시한 직접적인 정책 대응을 논하고, 대유행으로 인해 노동생활 관련 정책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속화되거나 중단되었는지를 논평한다. 그 후 사회적 대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유행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그 시기에 발생한 노동쟁의를 개괄한다. 이 글은 노동생활과 관련한 새로운 동향을 요약하면서 끝을 맺는데, 특히 대유행 시기 원격근무의 급증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일상적인 노동생활에 나타난 변화뿐만 아니라 입법적 및 정책적 변화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배경

대유행이 영국과 영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1차 전국 봉

* 이 글은 Eurofound(2021)의 *Working Life in the COVID-19 Pandemic 2020*의 국별 보고서 “UK: Working Life in the COVID-19 Pandemic 2020”을 요약·발췌한 것이다(<https://www.eurofound.europa.eu/publications/other/2021/working-life-in-the-covid-19-pandemic-2020#tab-03>).

쇄조치는 2020년 3월 23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보다 앞서 3월 20일에는 모든 주점과 식당(포장 판매는 제외), 극장, 체육관, 여가시설, 나이트클럽은 물론이고 학교(핵심노동자¹⁾의 자녀와 취약 아동을 돌보는 경우는 제외)도 휴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부여되었다. 국민들은 생필품 구입과 같이 매우 제한된 일부 목적 외에는 집에 머물도록 지시받았다. 사람들은 최대한 재택근무를 하고, 출퇴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5월 중순부터 정부는 점진적인 봉쇄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7월에는 경기를 부양하고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9월부터 코로나19 확진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단계별 방역체계하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춰 좀 더 엄격한 조치가 도입되었다. 11월에는 영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안전차단장치와 같은 단기적인 봉쇄조치가 후속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12월 중순에 확진건수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자 여러 지역에서 다시 전면 봉쇄를 단행했다. 2021년 1월 4일에는 영국 전역에서 새로운 봉쇄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지만(UK Government, 2021), 이러한 규제는 6월 21일에 전면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3월부터 점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3월과 4월을 합해 GDP는 25% 감소했다. 여름에는 회복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부터 11월까지의 성장이 주춤하면서 GDP가 2.6% 감소했다(ONS, 2020a).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산업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났는데, 숙박 및 음식업 부문이 가장 크게 위축되면서 4월과 5월에는 2월과 비교하여 생산이 91% 감소하였다. 반면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예컨대 금융서비스업의 생산은 6% 하락하는 데 그쳤다.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에 대한 청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4월 9일로 끝나는 4주 동안, 영국에서 120만 명이 통합급여에 대한 청구를 시작했다. 이는 월별 신규 청구건수의 통상적인 양보다 약 백만 건이 더 많은 수치이다. 또한 2020년 5월 14일로 끝나는 5주 동안 추가적으로 110만 명이 청구를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영국에서 통합급여 수급자 수는 3월에 300만 명에서 5월에 520만 명으로 급증하

1) 편집자 주: 핵심노동자(key workers)는 지역사회의 공공부문에서 건강, 교육, 안전과 같은 사회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를 일컫는다.

였고, 2020년 11월 현재 580만 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Mackley, 2021).

다른 지표를 살펴보면, 주당 총노동시간은 1차 봉쇄기간 동안 급감하여 2019년 4사분기와 2020년 2사분기 사이에 19.2% 감소했다. 2020년 3사분기에는 10.4% 상승하며 회복했지만, 여전히 1년 전에 비하면 9% 낮은 수준이었다. 2020년에는 채용공고도 크게 줄어들어, 6월까지 3개월 동안 전년대비 59% 감소라는 사상 최고의 감소율을 기록하였고, 8월부터 10월까지의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하였다.

■ 영국 정부의 대응: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19 기간에 기업, 노동자 및 일반 국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업무 연속성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천억 파운드에 넘는 규모의 직접적인 조세조치와 복지대책 및 지출조치가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보증대출을 통한 기업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1차 전국 봉쇄조치와 관련하여 2가지의 고용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비용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단일 정책은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제도(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 이하 'CJRS')²⁾이다. 이 제도는 강제휴직제도로도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 80%까지 부담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3월에 도입된 이후 관대성과 기간 측면에서 내용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로는 2021년 9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2020년 12월 13일 현재 990만 개의 일자리가 CJRS의 지원을 받았다. 또 다른 제도는 자영업 소득지원제도(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 이하 'SEISS')³⁾로서, 연평균 수익이 5만 파운드 이하인 자영업자를 CJRS와

2) Eurofound(2020a),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ase GB-2020-10/216 (Measures in United Kingdom), COVID-19 EU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2021.2.17).

3) Eurofound(2020f), "The Self Employed Income Support Scheme", Case GB-2020 (Measures in United Kingdom), COVID-19 EU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2021.2.17).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의 1차 시행기간에 27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2차 시행기간에는 240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제도 역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정부는 국세청의 세금납부유예제도(Time to Pay service)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신고소득세⁴⁾를 포함한 세금의 납부를 202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기업과 자영업자도 합의된 기간 동안 납세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대출/금융 및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확진건수가 감소한 2020년 7월에도 일련의 여러 조치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경기를 부양하고 사람들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더불어 킥스타트 제도(Kickstart Scheme)⁵⁾도 발표되었다. 이 제도는 복지급여인 통합급여 수급자로서 장기실업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16~24세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직업연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직활동 및 견습제도를 활성화하고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조치도 시행되었는데, 영국의 직업정보시스템인 국가진로서비스(National Careers Service)와 훈련생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등이 이러한 조치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생애숙련보장제도(Lifetime Skills Guarantee)에 의해 2021년 4월부터는 A레벨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학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대학과정 교육이 제공되었다. 견습생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며, 이러한 기업은 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Eurofound(2020c), “Deferral of VAT Payments due to Coronavirus (COVID-19)”, Case GB-2020-12/534 (Measures in United Kingdom), COVID-19 EU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2021.2.17).

5) Eurofound(2020e), “The Kickstart Initiative and Incentivising Apprenticeships”, Case 2020-28/943 (Measures in United Kingdom), COVID-19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2021.2.17).

■ 코로나19가 노동생활 관련 정책의 가속화 및 중단에 미친 영향

발전이 가속화된 분야

보건, 철도와 같은 여러 필수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었다(Harari et al., 2020). 지방정부도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봉쇄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받았다.

중요한 사실은 대유행이 불러온 혼란이 사회적 보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SEISS는 CJRS와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원제도에서 소외되던 자영업자에게도 사회적 보호를 확대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득 하한선에 미달하는 소득을 버는 노동자는 법정상병급여(Statutory Sick Pay : SSP) 수급자격이 없지만, 이제 자영업자도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상병급여와 동일한 요율로 통합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면서 대유행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 도입되었다. 더 나아가 대유행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소득 기준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1기⁶⁾에 통합급여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다른 복지제도의 이용 가능성과 관대성이 한시적으로 높아졌다(Butler, 2020). 정부는 통합급여의 표준수당과 근로세액공제의 기본요소를 1년간 증액함으로써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두 항목 모두 예정된 연간 인상분에 추가로 주당 20파운드가 더 늘어났다. 이는 신규 및 기존의 통합급여 신청자 모두와 기존의 근로세액공제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의) 독신인 통합급여 신청자의 경우, 표준수당은 월 317.82파운드에서 409.89파운드로 늘어나게 되었다.

대유행은 법정상병급여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⁷⁾ 우선 노동무능력에 대한 정의가 확대

6) 편집자 주: 전국적인 봉쇄조치가 내려진 2020년 3월 23일에서 봉쇄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0년 5월 중순까지의 기간임(이 글의 원본인 “UK: Working Life in the COVID-19 Pandemic 2020” 참조).

7) Eurofound(2020b), “Changes to Statutory Sick Pay(SSP)”, Case GB-2020-11/586 (Measures

되어 본인이 아픈 경우뿐만 아니라, 동거인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도 법정상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제는 질병결근 첫날부터(이전에는 4일째부터) 법정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지급한 법정상병급여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정부가 그 비용을 환급해준다.⁸⁾ 단, 사용자는 주당 최대 95.85파운드까지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대유행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1월에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계획을 발표하였다(Prime Minister's Office, 2020).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12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영국에 최대 25만 개의 고속린 녹색일 자리를 창출 및 지원하고, 2030년까지 민간부문에서 정부 투자금의 3배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다. 이 계획은 영국의 옛 산업 중심지를 부흥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상 풍력 생산량의 증가,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개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가속화, 무공해 항공기와 선박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의 녹색화 지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이 과정에서 2030년까지 5만 개의 일자리 창출, 2030년까지 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목표로 탄소 포집, 매년 3만 헥타르의 나무심기,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와 관련한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고 런던시가 녹색금융의 세계적 중심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첨단기술의 개발 등이 10대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발전이 중단된 분야

대유행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고용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유예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2019년 12월 19일에 발표된 새 고용법안도 이에 속한다(UK Government, 2019). 단일노동시장 집행기구의 도입, 26주 근무 이후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의 신설, 임신한 임금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임신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임신 종료 후 6

in United Kingdom), COVID-19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2021.2.17).

8) Eurofound(2020d), "Reclaiming of Statutory Sick Pay by SMEs", Case GB-2020-12/524 (Measures in United Kingdom), COVID-19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2021.2.17).

개월까지의 기간에 정리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확대 적용, 신생아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 연장, 노동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1주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 등의 조치가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 사회적 대화에 미친 영향 : 대응책 수립 과정에서의 사회적 파트너들의 참여

먼저 영국은 사회적 대화가 다수의 EU 회원국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또한 대다수의 단체교섭이 사업장이나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별교섭이 진행되거나 산별협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대화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영국 재무장관은 CJRS와 같은 대응 조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로는 영국 노총(TUC), 재계로는 영국 경총(CBI)과 같이 노사 양측의 주요 사회적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두 단체는 2020년 전반에 걸쳐 진행된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정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조치의 도입과 후속적인 조정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서 CBI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재계를 위해 이룬 성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정부, 노조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했음을 강조하며, 총리실, 기업에너지 산업전략부, 재무부와 진행한 회의에서 정책 관련 권고안을 제안했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CBI는 대유행 시기에 정책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CBI가 정책 변화를 주도하거나 정책 수정에 확실히 기여한 경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CBI, 2020; CBI, 2021).

TUC도 정부 및 기업집단과 정기적인 교류를 가지면서 캠페인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여 왔다. TUC는 중앙위원회 보고서에서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TUC, 2020), 2020년 3월에 TUC가 임금보조금제도를 긴급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뒤이어 CJRS의 설계와 관련하여 정부 및 기업집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TUC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 신설을 촉구하고,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노조와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무부와 긴박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곧이어 SEISS가 발표되었다.

또한 TUC는 코로나19 위기 시기 전반에 걸쳐 사회보장급여의 개선을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TUC는 재무장관과 두 차례의 원탁회의를 가졌고, 노조 지도자들과 영국은행 총재 간 회의 개최를 추진하였으며, 경제부 장관과의 정기적인 회의도 주관하였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TUC는 사업장에 관한 정부의 초기 코로나19 안전 지침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BBC, 2020a; 아래 내용 참조). 이러한 지침 개선에 따라 정부는 사용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는 노조 및 노동자와 협의하도록 한 방향성을 따라야 한다. TUC와 노조들은 안전한 작업관행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여러 후속 산업부문별 실무작업반에도 대표로 참가하였다. TUC는 보건안전청과 지방정부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원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보건안전청이 산하 콜센터의 업무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도 확보하였다.

또한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부문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들은 보건 및 안전과 같은 현안에 대한 캠페인을 강력하게 전개해 왔다. TUC는 이러한 노조들이 산업부문별/직종별 현안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TUC는 공공서비스포럼⁹⁾에서 정부와 해당 노조들 간에 산업부문별 논의를 조율하고, 철도, 버스, 해운 및 항공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들과 정부 간에 정기적인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TUC는 2020년 5월에 교육 노조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성명서를 통해 학교 수업을 확대하여 안전하게 재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열거하고 고위급 전략적 대화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2020년 6월에 정부, 노조 및 교육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학교관계자 자문단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노조에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9) 편집자 주: 공공서비스포럼(Public Services Forum)은 공공서비스 이슈에 관해 노동조합과 정부가 논의하는 비공식적인 토론창구이다.

■ 대유행 시기의 노동쟁의

2020년에 일부 산업부문별/직종별 노조는 쟁의행위를 예고했으며, 이는 대부분 업무상 안전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컨대 1차 봉쇄기간 초반에 우체국 직원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 즉 개인보호장비와 손 세정제의 부족, 우편물 분류 작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미흡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파업에 들어갔다(BBC, 2020b). 이 시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예를 들면 3월 28일에는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소스(ASOS)의 그림솔프(Grimethorpe) 물류창고에서 500명의 노동자가 이와 비슷한 문제로 파업에 돌입했다(Lazenby, 2020). 2020년 4월에는 메드웨이시(Medway Council)의 용역업체인 노스그룹(Norse Group)에 고용되어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거리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보호용 작업복 부족과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 타협안이 체결된 이후 파업은 철회되었다(Leclere, 2020).

실제로 1차 봉쇄조치가 내려진 후 처음 몇 주 동안, 하원의 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충을 토로하는 임금노동자들의 이메일과 트윗을 천 건 이상 받았다. 직원들이 좁은 사무실에서 가까이 모여 일하도록 지시받고, 심지어는 동료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에도 손 세정제가 지급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을 증언하는 내용이었다(Chapman, 2020).

2020년 10월에 영국 전역의 대학교 직원들은 부실한 코로나19 관리에 대응하여 쟁의행위를 감행하였다(Staton, 2020). 이는 전국적으로 감염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로 돌아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대학 경영진과 직원들이 수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노조 측인 대학노조(Universities and Colleges Union : 이하 'UCU')는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신뢰할 만한 동선 추적시스템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학생들의 복귀를 중단하는 등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대면 수업과 캠퍼스로의 복귀를 강행하였다. 신학기에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면서, 수십 개의 영국 대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였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1월 4일에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를 발표하였고, 대다수 대학에서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은 UCU가 수개월 동안 캠페인

을 펼친 결과였다(UCU, 2021). UCU는 이전 학기에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교에서 발생한 5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확진건을 추적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라는 비상사태 과학자문단(Scientific Advisory Group on Emergencies : SAGE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영국 중앙 정부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노동생활 관련 새로운 동향 : 정책조치, 입법 동향 및 일상적인 노동경험

물론 앞서 논한 바 있는,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조치들도 새로운 동향과 관련이 있다. 또한 대유행은 산업안전보건 요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Ferguson, 2021). 대유행 시기의 안전한 노동환경에 관한 정부의 최초 지침은 2020년 5월 11일에 발표되었다(BEIS, 2020). 이 지침은 처음에는 사무실, 공장 및 창고, 매장, 건설현장, 실험실, 음식점, 자택, 차량이라는 8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근무환경을 다루었고, 이후 6월과 7월에는 다른 사업장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지침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지침들은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침에는 코로나19의 위험성 평가 완료, 정기적인 청소 등과 같이 해당 기업이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8가지의 우선적 조치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새 지침은 별도의 법적 지위는 없으며, 사용자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임금노동자 50인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특정 기업에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규정이 다수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매, 숙박 및 여가 산업의 사용자는 직원이 일반 대중과 밀접하게 접촉할 경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또한 숙박업 부문의 사용자는 국가보건서비스(NHS)의 검사 및 접촉자 추적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해 직원과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사용자는 자가격리 중인 임금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자택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2020년 보건보호규정¹⁰⁾에 따라, 지방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업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대유행 시기의 일상적 노동경험과 관련하여, 영국에서의 노동생활에 나타난 주요 변화는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에 따라 2020년에 원격근무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Felstead and Reuschke(2020)의 보고에 의하면, 1차 봉쇄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적으로 재택근무만 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중은 2020년 1~2월 5.7%에서 2020년 4월에 43.1%로 8배 증가하였다. 2020년 6월에는 그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36.5%)을 유지했다. 재택근무는 고임금 및 고숙련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1일에도 노동자의 24%가 여전히 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Elliott, 2020). 이와 유사하게 영국통계청(ONS)의 「여론 및 생활방식조사」에 의하면(ONS, 2020b),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성인 취업자의 45%는 이전 주에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¹¹⁾

■ 논 평

대유행 시기 영국에서의 노동생활을 간략하게 검토한 이 글을 요약하자면, 2020년에 약 2,800억 파운드의 지출을 통해 기업, 노동자 및 일반 시민에게 전례 없는 규모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2020년 전반에 걸쳐 보도된 주요 사회적 파트너들의 사회적 대화를 검토해 보면,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들의 참여는 예상된 것이었지만, 노동계 측에 대한 기대는 그만큼 크지 않았다. 그러나

10) Health Protection(Coronavirus, Restrictions) (Local Authority Enforcement Powers and Amendment) (England) Regulations 2020.

11) 「여론 및 생활방식조사(Opinions and Lifestyles Survey)」는 원래 월간 조사였지만, 대유행 상황에서 주간 조사로 바뀌어 코로나19가 영국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로 이용되고 있다. 2020년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조사는 2,010명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응답률은 71.1%이고 응답자 수는 1,430명이다. 조사 결과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 또는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반영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국 대표 표본으로 집계되었다.

TUC는 SEISS의 도입, CJRS의 수정, 사회보장급여의 개선, 산업안전보건, 정부와 산업부문별 노조 간의 대화 촉진 등과 같은 여러 주요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20년 6월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관계자 자문단을 신설한 것은 사회적 대화가 확산되고 좀 더 공식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이렇게 신설된 제도들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대유행이 불러온 혼란은 사회적 보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복지제도가 한시적으로 수정되었으나, 사실 이는 늦은 감이 있다. 복지제도의 현금급여는 3년 동안 연 1% 증가에 머물다가 이후 4년간 동결된 후에 이번에 이르러서야 인상된 것이다. 실직자, 특히 자녀가 없는 실직자의 급여요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 이미 일부 보수당 평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이로부터 이러한 제도의 한시적 변경이 영구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재무장관에게 쇄도하고 있으며, 초당적 위원회도 목소리를 보탤다.

지속가능한 회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계획이 장래성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의하면 대유행 이후 녹색경제의 재건을 위해 12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숙련개발에 대한 투자가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킥스타트 프로그램 형태의 견습제도와 직업연수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규모와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 전환과 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이는 현재 너무나도 과소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결과로 인해 의심할 여지 없이 초래될 것으로 널리 예측되는 경제적 여파이다. 현재로서 미래는 매우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RCL**

참고문헌

- BBC(2020a), “Coronavirus: Draft Post-lockdown Workplace Rules Contain ‘Huge Gaps’ – TUC”, May 4, <https://www.bbc.co.uk> (검색일 : 2021.2.17).
- _____(2020b), “Royal Mail Putting Profits before People, Staff Say”, April 10, <https://www.bbc.co.uk> (검색일 : 2021.2.17).
- BEIS(2020), “Working Safely during Coronavirus”, <https://www.gov.uk> (검색일 : 2021.2.17).
- Butler, P.(2020), “Coronavirus Has Improved the Welfare System: There Must Be No Going Back”, *The Guardian*, April 21,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2.28).
- CBI(2020), “A Year of Impact”, <https://cbicdnend.azureedge.net/media/5954/2020-11-a-year-of-impact-stepping-up-for-business-through-the-tough-times.pdf?v=20210113.1> (검색일 : 2021.2.17).
- _____(2021), “How Is the CBI Responding?”, <https://www.cbi.org.uk> (검색일 : 2021.2.17).
- Chapman, B.(2020), “Coronavirus: Asos Accused of Playing Russian Roulette with Workers’ Health at UK Warehouse”, <https://www.independent.co.uk> (검색일 : 2021.2.17).
- Elliot, L.(2020), “Number Working from Home in UK Rises after Government U-turn”, *The Guardian*, October 1,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2.17).
- Eurofound(2020a),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ase GB-2020-10/216 (Measures in United Kingdom), COVID-19 EU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 2021.2.17).
- _____(2020b), “Changes to Statutory Sick Pay (SSP)”, Case GB-2020-11/586 (Measures in United Kingdom), COVID-19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 2021.2.17).
- _____(2020c), “Deferral of VAT Payments due to Coronavirus (COVID-19)”, Case GB-2020-12/534 (Measures in United Kingdom), COVID-19 EU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 2021.2.17).
- _____(2020d), “Reclaiming of Statutory Sick Pay by SMEs”, Case GB-2020-12/524 (Measures in United Kingdom), COVID-19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 2021.2.17).
- _____(2020e), “The The Kickstart Initiative and Incentivising Apprenticeships”, Case 2020-28/943

- (Measures in United Kingdom), COVID-19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 2021.2.17).
- _____ (2020f), “The Self Employed Income Support Scheme“, Case GB-2020 (Measures in United Kingdom), COVID-19 EU PolicyWatch, Dublin, <https://www.eurofound.europa.eu> (검색일 : 2021.2.17).
 - Felstead, A and Reuschke, D.(2020), “Homeworking in the UK: before and during the 2020 Lockdown”, WISERD Report, Cardiff, Wales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https://wiserd.ac.uk> (검색일 : 2021.2.17).
 - Ferguson, D.(2021), “Coronavirus: Returning to Work”, Research Briefing,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 (검색일 : 2021.2.17).
 - Harari, D., Keep, M. and Brian, P.(2020), “Coronavirus: Economic Impact”, Research Briefing,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 (검색일 : 2021.2.17).
 - Lazenby, P.(2020), “500 Workers Walk Out of Asos Factory after Company Fails to Enforce Social Distancing”, *Morning Star*, March 31, <https://morningstaronline.co.uk> (검색일 : 2021.2.17).
 - Leclere, M.(2020), “Coronavirus Kent: Medway Binmen and Street Cleaners Threaten to Strike”, *Kent Online*, April 3, <https://www.kentonline.co.uk> (검색일 : 2021.2.17).
 - Mackley, A.(2021), “Coronavirus: Universal Credit during the Crisis”, Research Briefing,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 (검색일 : 2021.2.17).
 - ONS(2020a), “GDP Monthly Estimate, UK: November 2020”, <https://www.ons.gov.uk> (검색일 : 2021.2.17).
 - _____ (2020b), “Technology Intensity and Homeworking in the UK” <https://www.ons.gov.uk> (검색일 : 2021.2.17).
 - Prime Minister’s Office(2020),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gov.uk> (검색일:2021.2.17).
 - Staton, B.(2020), “UK University Staff Prepare for Industrial Action over Covid”, *Financial Times*, October 7, <https://www.ft.com> (검색일 : 2021.2.17).
 - TUC(2020), “General Council Report”, <https://www.tuc.org.uk> (검색일 : 2021.2.17).
 - UCU(2021), “Move to Online Learning is a Victory, but Latest Lockdown Leaves Staff and Students in Limbo”, <https://www.ucu.org.uk> (검색일 : 2021.2.17).
 - UK Government(2019), “Queen’s Speech 2019”, <https://www.gov.uk> (검색일 : 2021.2.17).

· _____ (2021), “Prime Minister Announces National Lockdown”, <https://www.gov.uk> (검색
일: 2021.2.17).

* Eurofound의 COVID-19 EU PolicyWatch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사례는 <https://www.eurofound.europa.eu/data/covid-19-eu-policywatch>에서 찾아볼 수 있다.